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하려고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 비고 1. 생략 2. 가. ~ 자. 생략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50만원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 비고 1. 생략 2. 가. ~ 자. 생략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50만원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현행	개정안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타. 생략 3. 생략 부칙 <신설>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타. 생략 3.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4133